

[별표 1] 내역사업 단계별 분류기준 (제5조 관련)

수준	특징	상·중·하 단계의 분류방법
상·중 단계	중앙기관 별로 탄력적 사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작성여부) 선택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보고하거나 통계목적 등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등록·관리 ▪ (작성방향) 중앙기관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 분류 ▪ (고려사항) 속성정보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내용은 상·중단계에서 별도 관리 불필요
하 단계	기획재정부 협의 (부처 임의변경 불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작성여부) 필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반드시 등록·관리 ▪ (작성방향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부·집행·정산하는 단위 - 사업별 속성정보를 관리하는 단위 - 광역 시도 및 기초 지자체의 세부사업과 매핑 되는 단위 - 지역별 공통사업의 경우에는 동일 내역사업으로 관리(e호조를 통해 지자체별 세부사업으로 자동 분류) - 특정 지역·기관·목적 사업의 경우,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관리 ▪ (고려사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설, 삭제, 변경 시 반드시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 필요 - 하나의 내역사업이 복수의 국/과에서 수행되는 것을 지양